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요양보호사 부족 대비
한시적 시설 자체 운영방침 안내

□ 기본방침

○ 단계별 **기관 자체 비상 인력 운영계획** 수립

- 시설 내 **기존 인력 활용** 및 **대체 인력 확보** 방안 등 **계획 수립**
- 종사자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**공백 발생시 대비 1, 2차 직무 대행자 지정**

○ **시설 자체 운영방침**은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**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지침으로 1-2단계 인력 운영방침을 우선 활용**

□ 단계별 인력 운영방침

코로나19 확산추이 및 **시설내 종사자 현황**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**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제도 및 지자체(공단 운영센터) 확보인력을 우선 활용** 후 **필요 시 시설에서는 3단계 조치**

단계	1단계	2단계		3단계
구 분	중수본	지자체(시도)	공단 운영센터 (시군구)	시설자체
개 요	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및 인력 부족 시 **요양기관 또는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단기 파견 지원**	**사회서비스원** 또는 **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, 요양보호사 양성기관**과 협력을 통해 **자체 인력풀 구성·연계**	방문요양기관에 **등록된 유휴 요양보호사 중**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에 **파견을 희망**하는 요양보호사 **인력풀 확보·연계**	①장기요양**기관 간 요양보호사파견** 허용 ②**동일대표자 운영 기관 간** 요양보호사 **공동활용 허용**
인력현황	595명	495명+α	1,220명	+α

<1단계> 중수본 파견대기인력 활용

○ **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**으로 코호트 격리시설로 지정되었으나,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등 돌봄을 위한 **인력부족이 발생**한 경우 **중수본 파견인력 요청·대응**

○ **(파견절차)** **(코호트시설)** 시군구를 거쳐 시도별 전담팀에 파견인력 요청 → **(시도 파견인력 전담팀)**파견필요성 검토 후 중수본 파견 협의 → **(중수본)** 파견요청 및 필요인력 승인여부 검토 → **(승인시)** 시·도 파견인력 전담팀에 파견규모 통보 및 파견 대기인력 활용 파견 개시 → **(코호트시설)**파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* 대행 및 근태관리(시·도전담팀에 제출)

* 파견인력은 사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, 코호트시설은 해당 근로계약체결을 대행관리

– 시·군·구 및 시·도는 요양시설의 파견인력 요청시 신속대응을 위해 절차 및 서식 등 사전 안내 필요

– 인력풀 강화를 위해 관내 요양보호사 대상 개인별 파견신청 안내

*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(https://hcr.hira.or.kr)에 개인별로 신청

○ **(파견기간) 기본 2주** + 코호트 해제시까지 **연장 가능**(2주 단위)

○ **(파견인력 보수)** 중수본에서 국비로 인건비* 전액 지원

* (2주 파견(10일근무)시 요양보호사 수당수준 예시) 약 186만원**(기본수당 일 8만원 + 위험수당 일 5만원 + 특별수당 일 4만원 등),** 교대근무상황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수당액 추가될 수 있음

<2단계> 지자체 자체인력풀 확보 · 활용 가능

○ **(시·도)**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에서 **사회서비스원** 또는 **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, 요양보호사 양성기관**과의 협력을 통해 **자체 인력풀 구성** 후 필요시 해당 시·도 **파견인력 전담팀에 연계**

○ **(공단 운영센터**(시·군·구)**)** 방문요양기관에 **등록된 유휴 요양보호사** 중 코호트 격리 시설 **파견희망 요양보호사 인력풀 구성·연계**

○ **(파견절차) 중수본에서 직접 파견조치**(1단계)**가 어려운 경우**에 한해 적용하되, 파견**절차는 1단계와 동일**

– 시·도 또는 공단 운영센터 등을 통해 **기 확보된 인력풀의 인력**을 해당 **시·도 파견인력 전담팀에 연계**, 중수본 승인 후 **지자체 자체적으로 요양시설에 근무조치 가능**

* 근무조치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시·도전담팀 및 중수본에 제출하여 사후 파견처리도 가능

○ **(파견인력 보수) 중수본 인력 등록이 승인된 경우**에 한해 **중수본에서 국비**로 인건비* 전액 지원

– 이 경우 시·도에서는 **타 사업의 인건비와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**

* (2주 파견(10일근무)시 요양보호사 수당수준 예시) 약 186만원**(기본수당 일 8만원 + 위험수당 일 5만원 + 특별수당 일 4만원 등),** 교대근무상황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수당액 추가될 수 있음

<3단계> 한시적 시설자체 인력 확보 운영방침

◆ 위기상황 시 시설간 요양보호사 파견 인정 기준 신설

* **중수본 이외 파견인력**에 대해서도 **파견 전 중수본 인력풀로 등록** 및 **인건비 지원**

① 장기요양기관 간 요양보호사 파견 허용

○ **(대 상) 코호트 격리** 조치된 **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**

○ **(내 용) 입소형 장기요양기관***이 **소속 요양보호사**를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로 **임시 파견**하여 돌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**한시적 허용**

* 노인요양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시설, 단기보호시설

○ **(기 준)** 입소형 장기요양기관(A)이 소속 요양보호사(관할 지자체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만 가능)를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(B)로 **임시파견* 시,**

– **파견된 종사자는 파견한 기관(A)의 근무인력으로 인정**받으며, **별도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**

* A, B기관 간 지역, 거리 제한은 없으며, **파견 전 중수본 인력 등록** 필요

○ **(지원비용) 파견 전 중수본 인력으로 등록한 경우**에 한해 **국비(중수본 재원)로 지원**

* (2주 파견(10일근무)시 요양보호사 수당수준 예시) 약 186만원**(기본수당 일 8만원 + 위험수당 일 5만원 + 특별수당 일 4만원 등),** 교대근무상황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수당액 추가될 수 있음

– **인력파견을 지원한 기관(A)은 종사자 파견 전과 동일한 급여비용** 지급

*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요건 충족 시 가산 급여비용도 적용

○ **(지원요건)** 코호트 격리기관에서 **실제 근무기간 동안만** 인력파견 비용 지원

○ **(지원신청)** **시설 간 인력파견 협의 후 파견 전 중수본 인력으로 등록**

- **(코호트시설B)**시군구를 거쳐 시도별 전담팀에 (A기관 소속)파견인력 요청 → **(시도 파견인력 전담팀)**파견 필요성 검토 후 중수본 파견 협의 → **(중수본)**파견요청 및 필요인력 승인여부 검토 → **(승인시)**시·도 파견 인력 전담팀에 파견규모 통보 및 파견 대기인력 활용 파견 개시 → **(코호트시설B)** 파견인력(A기관 소속)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* 대행 및 근태관리(시·도전담팀에 제출)

* 파견인력은 시·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, 코호트시설은 해당 근로계약체결을 대행·관리

- 시·군·구 및 시·도는 요양시설의 파견인력 요청시 신속대응을 위해 절차 및 서식 등 사전 안내 필요

- 인력풀 강화를 위해 관내 요양보호사 대상 개인별 파견신청 안내

*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(https://hcr.hira.or.kr)에 개인별로 신청

○ **(적용기간)** 별도 공지 시부터 해제 시까지

○ **(보관서류)** ① 코호트 격리 기간(시작일 및 종료일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② 요양보호사를 파견받은 코호트 요양시설에서 '코호트 요양시설 파견 요양보호사 근무일지' 서식을 작성하여 요양보호사를 파견 한 기관과 요양보호사를 파견을 받은 기관 모두 반드시 5년간 보관

청구 시 주의사항

◇ 실제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기관은 코호트 격리가 발생한 (B)기관이나, **요양보호사의 원 소속 기관(A)(관할 지자체에 인력신고 기준)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입력**하여야 함

◇ **인력을 파견한 기관(A)이 해당 월의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 요건을 충족 시 그에 따른 가산도 가능**함

(파견된 요양보호사가 코호트 격리가 발생한 (B)기관에 실제 파견되어 근무한 시간은 인력을 파견한 기관(A)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나,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됨)

⇒ 청구 시, 파견 요양보호사의 상세 정보는 별도 입력 필요

◇ 파견된 요양보호사가 **소속 기관(A)에 복귀하기 전,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**한 경우에는 「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(수정)」에 따른 **'예방적 격리'(시설장 판단 하에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)로 근무인정 가능**

⇒ 이 경우, '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'를 수립·작성하고 5년간 보관 필요

② 동일 대표자 운영기관 간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허용

○ **(대 상) ①동일 대표자가 운영**하는 ②동일 부지의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**모두 코호트 격리 조치**된 기관

* 노인요양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만 해당됨

○ **(내 용) 동일 대표자가 운영**하는 **동일 부지**의 시설 **모두 집단감염이 발생**하여, **관할 보건소**에서 코호트 격리 통보 및 **기관간 동일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정**된 경우,

- **각각의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**를 양측 기관의 인력으로 **공동으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

* 코호트로 돌봄 공백이 큰 점으로 고려하여, 한시적으로 **양측 기관에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**가 **양측 기관의 수급자를 공동**으로 돌볼 수 있도록 허용

○ **(지원비용)** 기존 급여비용과 동일

○ **(적용기간)** 별도 공지 시부터 해제 시까지

○ **(보관서류)** 코호트 격리 기간(시작일 및 종료일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청구 시 주의사항

◇ 실제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장소는 A, B 기관 전체이나, **요양보호사의 소속 기관(관할 지자체에 인력신고 기준)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입력**하여야 하며, **각각의 기관이 해당 월의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 요건을 충족 시 그에 따른 가산도 가능**함